

서울특별시 마포구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 안 번 호	14-14
------------	-------

제출년월일 : 2014. 2.

제 출 자 :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

1. 제정이유

「지진재해대책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지진에 의해 시설물 피해가 발생한 경우 시설물의 추가 붕괴 등으로 생기는 2차 피해를 방지하고, 주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지진 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위험도 평가 실시 여부 판단기준 규정(안 제4조)

- 지진으로 시설물 피해가 발생한 경우
- 여진 등 2차 피해 발생이 우려되는 경우 등

나. 위험도 평가단 구성·운영 및 자격 규정(안 제5조)

- 재난업무 소관국장을 평가단장으로 하여 20명 이상으로 구성 단, 위험도 평가단에는 여성 2명 이상 포함
- 평가단 자격기준
 - 건축, 토목, 안전관리(건설안전)분야 초급기술자 이상
 - 건축사 및 건축사보
 - 구 재난안전대책본부장이 자격을 갖춘 것으로 인정하는 사람

다. 위험도 평가 및 현장조치 등을 규정함(안 제7조)

- 지진피해 시설물의 중요도에 따라 위험도 평가 우선순위를 정함
- 위험도 평가를 실시한 시설물에 대해서는 평가 결과를 3등급(위험, 사용제한, 사용가능)으로 구분하고, 피해 시설물이 잘 보이는 위치에 표지를 부착하거나 이에 준하는 방법으로 표시

라. 다른 지자체 지원 및 지원요청 등을 규정함(안 제9조)

- 신속한 위험도 평가의 실시를 위하여 서울특별시 또는 인근 시·군·구 재난안전대책 본부장에게 필요한 기자재 및 인원 등을 지원 요청

3. 제정근거

「지진재해대책법」 제21조(피해시설물 위험도 평가)

4. 제정조례안 : 따로붙임

5. 예산조치 : 지진 발생 시 우리 구 재난관리기금 활용

6. 기타사항

가. 입법예고 : 2013. 11. 30 ~ 12. 20(제출된 의견 없음)

나. 서울특별시 마포구 조례규칙심의회 심의·의결(2014.2.11)

다. 서울특별시 마포구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1부.

라. 감사담당관의 자치법규 부패영향 자율평가 : 원안동의

마. 가정복지과의 자치법규 성별영향 분석평가 : 개선의견 있음

평가기준	• 자격·요건 등 성별 특성 관련 조항
	제5조(위험도 평가단 구성·운영) ② 위험도 평가단의 단장(이하 “평가단장”이라 한다)은 구의 재난업무 소관국장이 되고 평가부단장은 위험도 평가단원 중에서 호선하며, 평가단장 및 평가부단장 을 포함하여 20명 이상으로 위험도 평가단을 구성한다.
관련조문	④ 구 지역본부장은 위험도 평가의 실시에 대비하여 다음 각 호의 전문가를 위험도 평가단원으로 등록·관리하여야 한다. 1. 「건설기술관리법」에 따른 건축, 토목, 안전관리(건설안전) 직무분야 초급기술자 이상 2. 「건축사법」에 따른 건축사 및 건축사보 3. 구 지역본부장이 자격을 갖춘 것으로 인정하는 사람

구 분		내 용
주요 분석평가 검토의견 (가정복지과)	① 안	제5조(위험도 평가단 구성·운영 및 자격)의 제4항제4호를 신설 4. 지역주민의 대표. 단, 성별 특성을 반영하여 여성위원 2명이상을 포함하도록 함
	② 안	제5조(위험도 평가단 구성·운영 및 자격)의 제4항 4호를 신설 4. 평가단 구성시, 여성위원이 10% 이상이 되도록 함
	③ 안	제5조(위험도 평가단 구성·운영 및 자격)의 제2항 문구 추가 ② 위험도 평가단의 단장(이하 "평가단장"이라한다)은(중략)... 20명 이상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위험도 평가단을 구성한다.
	의견2	별지 제1호 서식인 위험도 평가단원 등록(해제) 신청서의 인적사항에 "성별" 추가
검토의견 반영 결과	<p>① 의견1 : ① ~ ③안을 모두 수용하여 반영 → 제5조(위험도 평가단 구성·운영 및 자격)의 제2항에 단서조항 추가 ② 위험도 평가단의 단장(이하 "평가단장"이라한다)은(중략)... 20명 이상으로 위험도 평가단을 구성한다. 단, 위험도 평가단에는 여성 2명 이상을 포함하도록 한다.</p> <p>② 의견2 : 개선의견 반영 → 별지 제1호서식에 성별란 신설</p>	

서울특별시 마포구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진에 따른 시설물 피해가 발생한 경우 시설물의 추가 붕괴 등으로 생기는 2차 피해를 방지하고, 서울특별시 마포구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지진재해대책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서울특별시 마포구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을 구성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진피해 시설물 긴급 위험도 평가”(이하 “위험도 평가”라 한다)는 지진으로 피해가 발생한 경우 시설물의 추가 붕괴 등으로 생기는 2차 피해를 방지하고 주민의 안전 확보를 위하여 지진피해 시설물의 상태를 신속히 평가하여 위험 정도를 표시하는 것을 말한다.
2. “지진피해 시설물 긴급 위험도 평가단”(이하 “위험도 평가단”이라 한다)은 위험도 평가를 위해 「서울특별시 마포구 재난 및 안전관리 기구의 구성 · 운영 조례」에 따른 서울특별시 마포구 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구 재난안전대책본부”라 한다)의 본부장(이하 “구 지역본부장”이라 한다)이 제5조에 따라 구성 · 운영하는 서울특별시 마포구 지진 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을 말한다.

3. “지진피해 시설물 긴급 위험도 평가단원”(이하 “위험도 평가단원”이라 한다)은 서울특별시 마포구(이하 “구”라 한다) 및 인근 지역 거주자 중에서 위험도 평가단원으로 등록하고 위험도 평가 업무를 수행하는 건축·토목 등의 관련 분야 전문가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① 이 조례는 지진에 따른 피해가 발생한 구 관할구역 안의 모든 시설물에 적용된다.

② 구 관할구역 안의 위험도 평가는 구 지역본부장이 실시한다. 다만, 공공시설물 및 전문성이 필요한 경우에는 위험도 평가의 실시를 해당 시설물 관리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위험도 평가의 실시를 요청받은 시설물 관리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제4조(위험도 평가 실시 여부 판단 등) ① 구 지역본부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위험도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1. 지진으로 시설물 피해가 발생한 경우
2. 여진 등 2차 피해 발생이 우려되는 경우
3.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중앙재난안전대책 본부의 본부장(이하 “중앙본부장”이라 한다) 또는 같은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서울특별시 재난안전대책본부의 본부장(이하 “시 지역본부장”이라 한다)이 위험도 평가의 실시를 요구한 경우

- ② 구 지역본부장은 위험도 평가의 실시를 결정한 경우 피해지역 주민 등에게 그 사실을 지체 없이 알려야 한다.
- ③ 구 지역본부장은 지진에 대비하여 사전에 위험도 평가를 위한 체제를 정비하고 위험도 평가단원을 등록·관리하며, 필요한 기자재 등을 비축하여야 한다.

제5조(위험도 평가단 구성·운영) ① 구 지역본부장은 지진에 따른 시설물 피해가 발생하여 위험도 평가를 실시할 경우 지체 없이 구 재난안전대책 본부에 위험도 평가단을 구성·운영하여야 한다.

② 위험도 평가단의 단장(이하 “평가단장”이라 한다)은 구의 재난업무 소관국장이 되고 평가부단장은 위험도 평가단원 중에서 호선하며, 평가 단장 및 평가부단장을 포함하여 20명 이상으로 위험도 평가단을 구성한다. 단, 위험도 평가단에는 여성 2명 이상을 포함하도록 한다.

③ 위험도 평가단에는 지진피해 구역별 또는 시설물별로 평가반을 둘 수 있고, 평가반의 수는 피해지역의 범위, 피해시설의 종류 및 피해규모에 따라 구 지역본부장이 정한다. 이 경우 평가반의 반장은 관련분야 전문가로 한다.

④ 구 지역본부장은 위험도 평가의 실시에 대비하여 다음 각 호의 전문가를 위험도 평가단원으로 등록·관리하여야 한다.

1. 「건설기술관리법」에 따른 건축, 토목, 안전관리(건설안전) 직무분야 초급기술자 이상

2. 「건축사법」에 따른 건축사 및 건축사보

3. 구 지역본부장이 자격을 갖춘 것으로 인정하는 사람

⑤ 위험도 평가단원의 등록(등록 취소) 신청서 및 위험도 평가단원증은 각각 별지 제1호서식 및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⑥ 구 지역본부장은 위험도 평가단원을 대상으로 연 1회 이상 위험도 평가에 관한 교육·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다만, 시 지역본부장이 위험도 평가단원을 대상으로 세미나 또는 워크숍을 개최한 경우 구 지역본부장이 교육·훈련을 실시한 것으로 본다.

⑦ 구 지역본부장은 위험도 평가단원이 질병, 품위손상 및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부적합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위험도 평가단원의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제6조(위험도 평가 시기) ① 구 지역본부장은 지진에 따른 2차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위험도 평가가 신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험도 평가 시기 및 기간을 정하여야 한다.

② 평가단장은 피해규모 및 현지여건을 감안하여 위험도 평가 기간을 구 지역본부장의 승인을 얻어 연장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7조(위험도 평가 및 현장조치 등) ① 구 지역본부장은 위험도 평가와 관련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사전에 파악하여야 한다.

1. 위험도 평가 대상지역

2. 시설물 피해 상황

3. 화재 발생 상황

4. 치안 유지 및 폭동 발생 여부

5. 그 밖에 위험도 평가에 필요한 사항 등

② 구 지역본부장은 지진피해 시설물의 중요도에 따라 위험도 평가 우선 순위를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학교 및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 관리법」 제3조제1항에 따른 다중이용시설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위험도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③ 구 지역본부장은 위험도 평가를 실시한 시설물에 대해서는 평가 결과를 3등급으로 구분하고, 다음 각 호의 표지를 지진피해 시설물의 잘 보이는 위치에 부착하거나 이에 준하는 방법으로 표시하여야 한다.

1. 별지 제3호서식의 위험 표지

2. 별지 제4호서식의 사용제한 표지

3. 별지 제5호서식의 사용가능 표지

④ 구 지역본부장은 위험도 평가의 결과가 위험 또는 사용제한 등급인 경우 지진피해 시설물의 잘 보이는 위치에 별지 제6호서식을 부착하거나 표지 부착이 곤란한 시설물에는 출입 차단시설 또는 안전선 등을 설치하고 시설물의 사용과 출입을 통제할 수 있다.

제8조(위험도 평가 결과 보고서 제출 등) ① 평가단장은 현장조사를 통한 위험도 평가를 완료한 후 15일 이내에 위험도 평가 결과 보고서를

구 지역본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평가단장은 3개월 이내에 최종 보고서를 작성하고, 위험도 평가 활동과 관련된 보고서, 사진 등 결과물 일체를 구 지역본부장과 시 지역본부장을 경유하여 중앙본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평가단장은 지진피해 시설물에 대한 후속조치 또는 정밀분석 등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후속조치계획 등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④ 구 지역본부장은 위험도 평가단의 최종 보고서와 지진피해 시설물에 대한 후속조치계획 등을 검토하여 위험도 평가 결과 보고서를 발간하여야 한다.

제9조(다른 지방자치단체 지원 및 지원요청 등) ① 구 지역본부장은 신속한 위험도 평가를 실시하기 위하여 시 지역본부장 또는 인근 시·군·구 재난안전대책본부장에게 필요한 기자재 및 인원 등을 지원요청할 수 있다.

② 구 지역본부장이 시 지역본부장 및 인근 시·군·구 재난안전대책본부장으로부터 위험도 평가와 관련된 지원요청을 받은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지원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구 지역본부장의 지휘에 따라 위험도 평가 관련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제10조(위험도 평가단원의 안전 및 피해 보상) ① 구 지역본부장은 위험도

평가를 실시할 때 위험도 평가단원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② 위험도 평가 활동으로 위험도 평가단원이 사망하거나 부상당하였을 경우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관련 보험에 가입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1조(경비 지원) 위험도 평가의 원활한 실시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위험도 평가단원에게 위험도 평가 활동 등에 필요한 수당과 여비, 차량 임차비, 보고서 작성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운영세칙) 이 조례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 위험도 평가단의 구성·운영, 위험도 평가 세부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구 지역본부장이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서식]

위험도 평가단원 등록(등록 취소) 신청서

회원번호		신청일	
성명		생년월일	
소속		직급	
주소 : (-)		전화 : ()	
		FAX : ()	
E-mail :			
전문분야 :			
<input type="checkbox"/> 건축물 <input type="checkbox"/> 교량·터널 <input type="checkbox"/> 댐·저수지 <input type="checkbox"/> 철도 <input type="checkbox"/> 원자력시설 <input type="checkbox"/> 항만 <input type="checkbox"/> 가스·전력·통신 <input type="checkbox"/> 기타()			
본인은 「지진재해대책법」 제21조에 따른 서울특별시 마포구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원 (등록, 등록 취소)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 (인)			
서울특별시 마포구 재난안전대책본부장 귀하			

[별지 제2호서식]

<앞>

서울특별시 마포구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원증

성명 :

소속 :

주소 :

사진

위 사람은 「지진재해대책법」 제21조에 따른 서울특별시 마포구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원임을 증명함.

서울특별시 마포구 재난안전대책본부장 (인)

120mm×90m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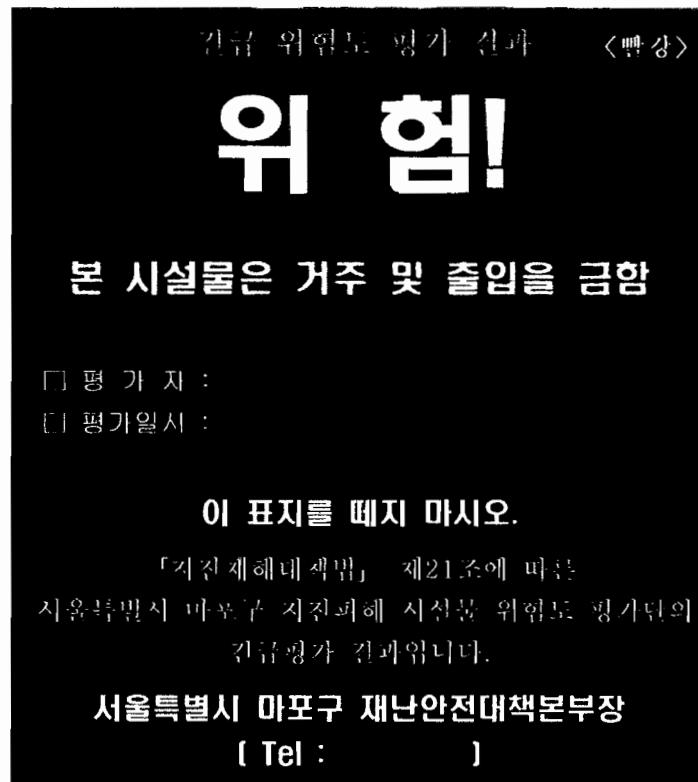
< 뒤 >

본 단원증을 습득하신 분은 서울특별시 마포구
재난안전대책본부(Tel :)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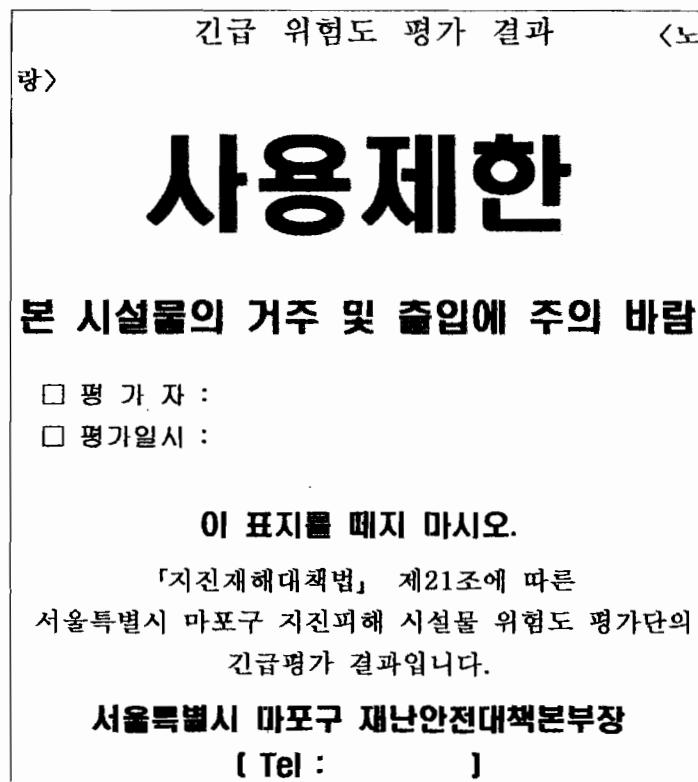
서울특별시 마포구 재난안전대책본부장

120mm×90m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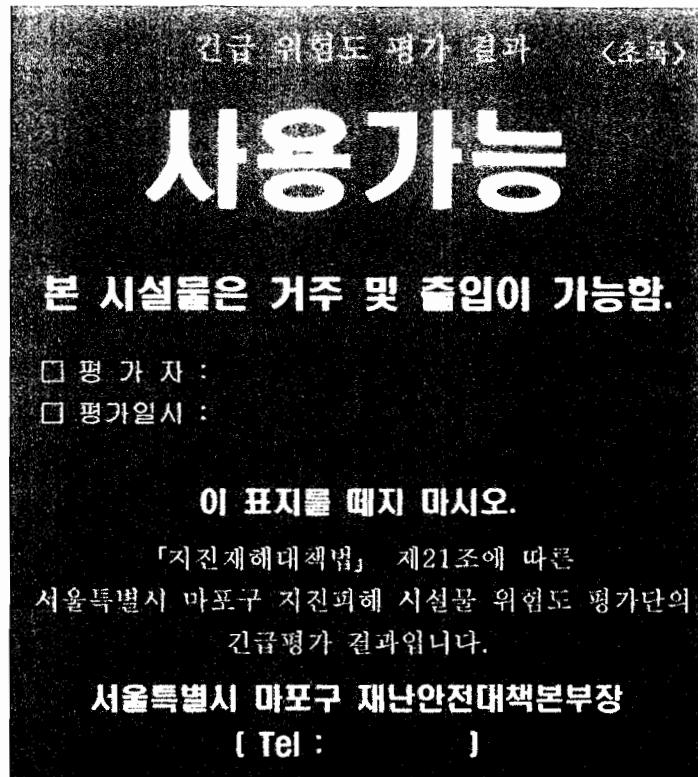
[별지 제3호서식]



[별지 제4호서식]



[별지 제5호서식]



[별지 제6호서식]

